

7월 시행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ii)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
- (iii)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iv)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됩니다.
- (v)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